

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규남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09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14일

발 의 자: 김규남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김경훈, 김영철, 김용호, 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 김태수, 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 민병주, 박상혁, 박영한, 박춘선, 박환희, 서상열, 소영철, 송경택, 윤영희, 윤종복, 이상욱, 이종환, 최민규, 한·신, 허·훈, 홍국표, 황철규 의원(29명)

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」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은 국가 및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정하여 이 지역 내의 건설공사 시행이 지정문화재 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그러나 동 조례 제19조제5항은 상위법인 「문화재보호법」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·추상적 규제를 두고 있음.
- 이에 제19조제5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문화재와 시민의 삶이 공존·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외의 규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·추상적 조항을 삭제함(안 제19조제5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문화재보호법」

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5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9조(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) ① ~ ④ (생 략)</p> <p>⑤ <u>건설공사에 대한 인가·허가를 행하는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공사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면 제4항을 준용한다.</u></p>	<p>제19조(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